

의안번호	제 11 호
의결 년 월 일	2006년 9월 7일 (제 123 회)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 출 자	음 성 군 수
제출년월일	2006년 6월30 일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5
------	----

제출년월일	2006년 6월 30일
제 출 자	음 성 군 수

1. 의 안 명 :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제안이유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감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 요 골 자

- 세 입 결 산 액 : 335,682,010,011원
- 세 출 결 산 액 : 215,513,041,314원
- 잉여금 결산액 : 120,168,968,697원
- 예비비 결산액 : 484,714,000원
- 기 금 결 산 액 : 3,941,079,136원
- 채 권 결 산 액 : 4,631,896,560원
- 채 무 결 산 액 : 20,353,325,040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99,442,539,412원
- 물 품 결 산 액 : 5,176,721,955원

4.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5. 첨부서류

- 2005회계연도 결산서(책자)
- 2005회계연도 결산 부속서류(책자)
- 2005회계연도 결산 감사의견서(책자)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결산승인)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 가. 세입예산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